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산재시 법적인 성격

이 무 성*

*광주대학교 산업기술경영학부

Legal nature on industrial disasters of students to participate in Co-op program

Lee Mooseong*

*Dept. of Industrial Tech. Management, Gwangju University

Abstract

Many students can experience, such as for credit and social activities through field trips and participate in field trips.

For on-site field training exercise participants currently in Gwangju University They take part in field trip 1, 2, 3 and 4 as the type..

Field Practice 1 type in summer and 2 in winter of 4-week period during vacation holidays with 3 credits, field trips 3 type of 8-week period during vacation holidays with 6 credits recognized for ₩ 400,000 in job training fee is also payable by the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gency.

4 types of job training are fourth grade (Architecture Grade 5) can be employed in conjunction for more than 15 weeks and admitted to the second semester of 15 credits by participating in job training.

For most schools, but to pay a fee-job training at the University of Hanyang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a student assistance in the field training participating companies.

This establishment does not have a clear idea of the legal entities responsible in the event of industrial accidents.

Academic research is also nonexistent state for them.

In this paper, we distinguish the personality for it via the existing labor precedents with respect to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n industrial accident.

This aims at putting the means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University of job training support.

Keywords : Field trips, On-site field training, Industrial accident, Legal responsibility

† 본 논문은 2014년도 광주대학교 연구진흥지원금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Lee Mooseong

E-mail: mslmsl@gwangju.ac.kr

Received February 17, 2015; Revision Received June 11, 2015; Accepted June 17, 2015.

1. 서론

1.1 문제의 제기

대학의 현장실습¹⁾ 참여학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LINC 사업²⁾ 참여로 인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이 학과 교과목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 체제를 선도적으로 개편하고 직장 대응 부조화를 해소하여 구직자인 학생들과 구인자인 업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학연계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동반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LINC 사업단의 주요한 목적이다. 학교, 학생, 업체의 3 당사자들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업체가 제공하는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적게는 3학점에서 많게는 15학점이 참여학생에게 부여되고 있다. 현장실습 참여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지원센터³⁾, 정규과목으로서 이를 담당하는 학과 지도교수⁴⁾, 참여학생들은 학생본인, 대리인⁵⁾으로서 학부모 그리고 현장실습 참여업체의 경우에는 업체 대표, 업체의 지도위원⁶⁾들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학생들은 방학, 학기 중 또는 졸업을 앞 둔 마지막 학기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의 학생으로서 수업의 한 형태로 참여를 한다. 현장실습 참여업체의 작업환경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거의 산재위험발생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공학계열의 경우

에는 산재발생 개연성이 높다. 현장실습 참여 전 현장실습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실습을 주관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한다.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경제적인 보상과는 별도로 법적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산재 시 법적 성격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로서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단편적이면서 지엽적으로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글들이 신문, 잡지 등에 간헐적으로 게재될 뿐이다. 최근에는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현장실습 참여학생들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낮은 근무조건에 대하여 몇 자료들이 발표되었다. 현장실습 참여전에 현장실습 참여업체, 현장실습 주관 대학교, 현장실습 참여학생 3당사자가 표준협약안에 상호 협의 내용을 '산업체 현장실습 협약서' 7)에 서명날인하는 형식은 취한다.

학교별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형태는 다르다⁸⁾. 학점 부여로서 현장실습의 경우에 학점부여는 현장실습 기간학기가 아닌 다음 학기 학점에 가산된다. 해당 학기가 아닌 이연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도 많은 논란이 있다⁹⁾. 이 부분은 실제 산업재해 시 기간 귀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1.2 논의의 범위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산재에 대한 법적성격에서 다루어질 범위는 광의적으로는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등 포괄적으로 언급되어질 수 있다. 논의의 범위는 넓게 확대할 수도 있고 이를 좁혀서 특정 주제에 국한시킬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

1) 현장실습이란 현장 적응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학협력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의 약어

3) 대학과 실습기관으로서 참여업체와의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참여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현장실습과 관련된 서류관리, 실습일정 검토, 실습학점 확인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4) 현장실습 참여학생 사전면담, 운영지도 계획 수립, 실습 희망학생의 업체와 연결, 현장실습 중 현장 방문하여 실습학생 지도, 실습수료 후 평가를 통하여 학점 부여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5) 현장실습 참여학생이 미성년자의 경우에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동의 등 참여학생을 대리하여 법적인 행위를 수행

6) 현장실습 기간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지도하는 자로서 현장실습 참여학생을 지도하는 대가로 일정한 지원금을 현장실습 참여학생이 소속된 대학을 통하여 지급받는다.

7) 기재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사업주의 의무, 현장실습 학생의 의무, 현장실습 기준시간, 현장실습 지원비, 보험료의 부담, 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 광주대학교의 경우에는 현장실습 1, 2, 3, 4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현장실습 1'은 여름방학 4주 실습을, '현장실습 2'는 겨울방학 4주, '현장실습 3'은 여름, 겨울방학 8주 실습을, '현장실습 4'는 4학년 2학기(5년제의 경우에는 5학년 2학기)에 15주 현장실습을 학기 중 수행한다.

9) 현장실습 수행하는 기간 중 학점부여가 타당하다. 광주대학교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이 계절하기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방식인 다음 학기에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근로자로서의 관리책임에 국한하여 협의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1.2.1 통상적 근로관계

통상적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금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수취하는 근로계약이다. 근로계약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근로계약으로 나누어진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민법의 규정인지 노동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인지에 따라 산업재해 시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접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는 근로계약의 적용대상을 업체에 두느냐 근로자에 두느냐의 차이에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의 범위를 사회법인 제 노동관계법에서는 넓게 해석을 하고 있다.

1.2.2 시설이용권과의 관계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소속대학의 재학중인 학생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근로자는 아니다. 그러나 시설이용권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근로관계가 협약을 체결한 현장실습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성립할 수 있다.

1.3 예비적 고찰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근로자 자격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다. 근로 제공을 강조하면 근로자로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진다. 현장실습을 실습 수업의 한 유형으로서 이를 강조하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주장할 수 없다.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지위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 주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적인 관점이 제시될 수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이 다른 근로관련 사안들에 비교하여 크지 않아 학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이 대학교내의 주요한 활동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참여학생들에 대한 노동권적인 입장에서 이들의 권익향상을 중심으로 소수지만 몇 편의 논문들도 발표는 되고 있다. 참여학생의 지위에 대하여는 학습을 수행하는 학생이라는 측면과 예비 직장인으로서 근로자 이전의 단계로서 지위라는 개념으로 대별될 수 있다. 학생신분에서는 산재사고시 일반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전의 관행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러나 근로자 이전의 단계¹⁰⁾로 간주하면 학생신분으로서 권리보다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만큼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유리한 권리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법¹¹⁾의 적용 대상자에 현장실습 참여학생이 포함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현재까지 제기되어 온 다양한 논점들을 본 논문에서는 빠짐없이 전부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분석할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논점 중 현재 그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산재발생 시 참여학생의 법적인 성격에 국한하여 논지를 진행하고자 한다.

1.3.1 관련 법률규정

현장실습과 관련되어 적용되고 있는 국내의 법령으로는 산업교육법에서 정의한 산업교육이다¹²⁾.

이후 1973년에 동법의 개정을 통하여 '산업교육'에서 현장실습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¹³⁾.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성격에서 다루어질 범위는 광의적으로는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등 포괄적으로 언급되어질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로서의 관리책임에 국한하여 협의로 그 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현장실습 학생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은 1997년이다. 동년에 개정된 산업보상법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발생한 현장실습학생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삽입하였다¹⁴⁾.

10) '근로자 이전 단계'는 필자의 주장으로서 법적으로 정리되어 널리 공유된 개념은 아니다.

11) 산업재해보상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12) 1963년에 제정한 산업교육법이 최초로 현재의 현장실습과 유사한 형태이다.

13) 개정된 산업교육진흥법 제 조에 의하면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로 명문화하였다.

14) 구, 산업보상법

1.3.2 실태

LINC 사업의 내용 중 한 구성요소로 현장실습이 운영되고 있다. 현장실습의 경우는 이를 수행하는 학교별로 그 특성에 따라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하여 기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학생들을 현장실습에 참여시키고 있다¹⁵⁾. 그러나 지방에 소재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하여 국비 또는 교비로서 직접 현장실습 당사자인 학생에게 지급을 한다¹⁶⁾. 주말 현장실습, 시간제 현장실습¹⁷⁾ 등 그 유형도 점차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준적인 현장실습의 유형을 현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¹⁸⁾의 사례를 통하여 그 운영 실태를 아래와 같이 도식으로 표시를 해 볼 수 있다.

<Table 1> Co-Op Program's Types¹⁹⁾

Type	Period	Credit	Target
1	4weeks(Summer vacation)	3	3Grade/4(5) Grade
2	4weeks(Winter vacation)	3	
3	8weeks(Summer/Winter voc.)	6	
4	15weeks	15	4(5)Grade 2Semester

2. 본론

노동관련 법규 대부분은 사회법²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민법²¹⁾이 사적자치로서 개인간의 대등한 관계로서 법령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법은

법적용의 당사자를 대등관계가 아닌 불평등한 관계를 가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장실습 참여학생들의 경우에는 LINC사업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등의 이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행정예규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학계의 다수 학설로서 이론의 정립이나 소수학설로서의 주장도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문법으로서 법령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법이나 최소한 관습으로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관행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지지를 받을 경우엔 관습으로서 그 사회에 법적인 확신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법령체계 정비이전이라도 최소한 학계에서나마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사회법적인 관점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학생의 지위가 아닌 근로자 편입 판단체인 ‘예비근로자’로서의 관행의 정립은 필요하다. 사실적 관행으로서 법령해석의 준거로서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 반복적인 행위²²⁾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법 정신에 근거를 둔 관행의 확립 전까지는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규정하고 있는 노동 제 관계법령에서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령해석을 위한 행정예규 등의 축적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현장실습 참여학생들의 현장실습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의 유형들이 전혀 수집되고 있지 않아 통계자료들을 통한 유의미한 통계수치로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장실습 참여학생들의 현장실습장소는 일반 근로자들의 산업현장과 비교하면 사고발생의 개연성은 아주 낮다.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서 협약체결당사자로

15)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Erica), 경북대학교 일부 학과에서 최저임금을 웃도는 금액을 기업체로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16) 후생복지 성격의 보조금으로 교통비, 식사비, 기숙사비 명목으로 현장실습 참여업체에서 참여학생에게 직접 또는 학생이 소속된 대학교의 현장실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실습지원센터, 학생소속의 학과의 현장실습지도 교수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빈번하게 발생한다.
 17) 시간제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선취업 후진학’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 특성화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극히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
 18) 2012년부터 시작하여 2단계 2차년도(2015년)사업에 진입하고 있는 광주대학교
 19) 광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2012년 linc사업참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2014년 2학기 현재까지 정규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 학생용 매뉴얼에 있는 내용 중 현장유형에 대하여 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광주대학교 발행 현장실습 학생용 매뉴얼 9쪽 참조)
 20) 독과점금지법,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등 경제법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노동법령 등 개별법령이 대표적으로 사회법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21)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시민법으로서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다.
 22) 관행으로서의 반복적인 행위는 최소한 재판 등 법령 해석 시 자유 심증주의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재판관결에 반영할 수 있는 조리 또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합의로서 상식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체의 행위들을 지칭한다.

서 현장실습 참여학생, 현장실습 업체, 학생이 소속된 학교 등 당사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사고현장 당사자인 현장실습업체의 지도위원²³⁾들에게도 전달되지 않고 참여학생이 개인적으로 수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실습 참여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전에 현장실습 산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험을 일괄하여 가입을 한다. 현장실습 참여 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참여학생들에게 현장실습 시작 전에 사전교육으로서 산업안전,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그리고 가입된 보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²⁴⁾. 학생들의 경우에 현장실습의 참여자격은 3학년과 4학년이 그 대상이다. 참여학과도 제한되어 있다. 제한된 참여학과는 학생들의 이론의 현장실무능력 적용이 어려운 업무, 아르바이트 성격의 단순업무, 학과의 특성상 자격취득시 사전에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현장실습의 경우 등이다²⁵⁾. 현장실습이 대학의 수업 등과 외부기관의 실습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 또는 간헐적, 일시적으로 시행은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기업에 결합하거나 기업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채 또는 단기근로자 형태의 인턴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현장실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현장실습의 유형으로서 졸업직전 학기에 시행하는 현장실

습²⁶⁾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을 당연 적용할 수 있다²⁷⁾.

졸업직전 마지막 학기에 시행하고 있는 현장실습 유형은 이전에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졸업을 하지 않은 4학년 2학기에 취업하는 학생들의 학사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²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채택되었다. 현장실습의 당초 도입 되었던 기본취지가 예비 직장인²⁹⁾으로서 사전 직장체험교육과 실무능력을 향상하여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적성과 전공 그리고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위한 탐색과정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다소 벗어났지만 학생들의 편의 증진도모를 위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제도적으로 정착을 이미 한 상태이다³⁰⁾.

3. 결론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지위에 대하여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수 사람들에 의하여 공감대는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학생신분으로서 정규 학과목의 한 방편으로 학점 취득으로 접근을 하면 참여학생에 대한 지위는 근로자가 아닌 학생신분이다. 그러나 근로제공의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면서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다만 현

- 23) 현장실습 지도위원은 일정기간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 능력을 지도하는 현장실습 업체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보통 인사책임자이거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현장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담당자로 현장실습업체에서 현장실습 참여전에 지정을 한다.
- 24)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광주대학교에서도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현장실습전 연 2회 산업안전, 직장예절, 산재시 보험처리절차 등을 사전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2014.6.24.(하계방학 현장실습), 2014.12.23.(동계방학 현장실습) 각 4시간씩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사전 OT의 주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산업재해발생시 처리절차로서 사고발생시 현장실습 업체(지도위원), 학과 현장실습 담당 지도교수, 소속된 학교의 현장실습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최우선적인 사고내용의 공유 등이다.
- 25) 현장실습 제외 기준으로 1.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제외(대표적인 것으로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2.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사회 전반적 근로시간과 현장실습의 의미를 고려하여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은 제외) 3.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1주 2~3일 실습하는 형태 등 간헐적,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현장실습 운영기준(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에 따라 실습의 연속성이 결여되게 운영하는 형태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학생 개인 섭외 및 (공채)인턴 등의 형태 5. 기타 사회봉사, 현장체험/답사, 견학 등 현장실습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기 체험 활동 등은 제외(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 KIAT 일부 내용 발췌)
- 26) 광주대학교의 경우엔 2014년도에 52명의 학생이 '현장실습 4' 유형으로서 이수 하였다.
'현장실습 4'의 참여조건으로서 2014.6.12.부터 2014.9.12.까지 취업하는 학생으로서 졸업학점이 15학점 이하로 남아 있는 학생에 국한하여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이 해당된다.
- 27) 이 경우에도 현장실습은 그 취지와 운영은 현장실습 참여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직접 관리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당연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28) '현장실습 4' 실시 이전에는 4학년 2학기 취업학생의 학사행정은 학과지도교수, 교과담당교수의 학생편의라는 관점에서 학생과 해당 교수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학점이수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 29) '예비직장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니고 근로자 편입 전 단계 등 유사한 표현으로 다양하게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 30)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학기 직전의 취업상태에서의 현장실습은 실질적인 현장실습이 이유로 도입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장실습은 참여학생의 소속된 학교의 직접적인 주관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운영지침³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신분' 설정에 대한 이론들은 존재할 수 있다.

그 신분이 학생이지만 근로자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로서 산업재해 발생 시 그 권익보호는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업무군의 등장에 따라 종전 방식에 의한 근로자 지위의 인정은 학설이나 판례로서도 많이 수정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법적인 관점에서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논리전개를 시도하였다. 참여학생과는 달리 참여학생이 소속된 학교와 현장실습 업체는 산재발생시 참여학생과의 지위로서 위치설정에서 참여학생의 산업재해 시 그 이해의 폭이나 책무로서 부담이 달라진다. 현장실습 활동을 근로 제공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에서 고용주가 참여학생이 소속된 학교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실습업체인지에 따라서 그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제기될 수 있는 논점은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금³²⁾을 기업체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에 고용주의 지위의 변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이다. 현장실습업체의 부담이 전액이 아닌 부분 부담일 때 고용주로서의 책임분담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다. 업체의 지원부담금이 교통비, 식사대, 기숙사비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때 동 부담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장실습 기간 중 산업재해의 경우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법적인 성격을 살펴보았다. 정상적인 기간 내의 현장실습은 산업재해로 포함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현장실습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실습 기간을 참여 학생과 업체(지도위원 포함)가 임의적으로 변경하였을 때 당초 예정된 현장실습 종료일자 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을 받는 산업재해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 이다. 국내가 아닌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지위로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간주할 수 있는지의 판단근거는 더 복잡한 분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장실습에 대한 여러 형태의 법적인 성격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전부 언급할 수는 없다. 여러 유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그 성립된 이론을 분석하는 것은 본 논문이 규명하고자 하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산업재해 시 법적인 성격을 정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

은 가정들에 대하여 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오히려 본 논문의 주제에 대한 집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일부 소개를 하였거나 이에 언급조차 하지 않은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법적인 성격에 대하여는 향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 놓는다.

4. References

- [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dustrial Accident Analysis(2013),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 Gwangju University' Job training support center(2014), job training Student Manual, Guangzhou University.
- [3] Seoul National Labor Research Association(1994), Labor studies seismic Publishing.
- [4] Lee Junhyun(2014), LOGOS civil law, Hyeongseol
- [5] The Korea Industrial Technology Foundation, field training operations manual, 2013,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IA.T.

저 자 소 개

이 무 성



1982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0 연세대학교 경영학석사 수료
2001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박사 수료
1982-1984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계장(5급)
1986-1994 IBM 전산개발/재무기획 팀장(F/S)

1995-2013 천지기업상담(주) 대표이사

2014-2015현재 광주대학교 산업기술경영학부 교수

31) 교육과학기술부, KIAT 간행 '현장실습운영매뉴얼 10쪽 참조,

32) 이를 지원금으로 편의상 명명하는 것으로 분담금, 장려금, 복지보조금, 현장실습 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 통일된 용어로의 정리가 필요하다.